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1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9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6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76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77
※ 참고사항.....	7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3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 표 이 사 : 정 상 수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77-19(대전동)
 (전 화) 031-8039-1569
 (홈페이지) <http://pr-product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백 승 걸
 (전 화) 031-8039-156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30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 77-19 1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 의 안 건

제 1 호 의안 : 제 17 기(2017.1.1 ~ 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300원 배당)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조민식 신규선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조 민 식	1966.08.1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KICPA) - 前 삼성 KPMG FAS본부장 - 現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現 (주)카카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없 음	없 음
	이 사 회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후보자 조민식 신규선임)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 금번 정기주주총회는 사은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표이사 정 상 수(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용성 (출석률: 100%)	이재휘 (출석률: 80%)
			찬 반 여부	
1	2017-01-17	Pharmaresearch USA, Inc. 해외현지법인 신규 설립의 건	찬성	불참
2	2017-02-09	1. 제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 1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3	2017-02-28	1.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 16기 재무제표 부의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안) 부의의 건 4. 이사 선임(안) 부의의 건 5. 이사보수한도(안) 부의의 건	찬성	찬성
4	2017-04-10	법인예금 담보제공의 건	찬성	찬성
5	2017-05-18	Promore Pharma AB 법인 지분취득의 건	찬성	찬성
6	2017-05-26	제2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증설의 건	찬성	찬성
7	2017-06-26	Promore Pharma AB 법인 지분취득의 건	찬성	찬성
8	2017-07-03	신규법인 설립 투자의 건	찬성	찬성
9	2017-09-27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건	찬성	불참
10	2017-11-29	1. (주)바이오씨앤디 법인 지분취득의 건 2.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2인 (김용성, 이재휘)	2017-02-09	1. 제 16기 재무제표 승인 2. 제 16기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2017-02-28	1. 제 16기 재무제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	1,500	24	12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6명)를 포함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의 원천기술인 PDRN® 및 PN의 제조기술은 세포재생이라는 그 특성 상,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하나, 신체의 조직수복이라는 측면에서의 재생의학 분야 뿐만 아니라, 항노화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목표시장은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한 근골격계질환시장' 및 '항노화산업 중 안면미용시장'으로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 기반의 근골격계질환시장]

재생의학원료인 당사의 PDRN® 및 PN은 재생의학 분야 중 근골격계 질환 시장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건 인대 손상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절강주사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활동 목표시장은 근골격계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면미용시장]

당사의 PN 기반 안면미용 의료기기는 산업연구원이 정의한 항노화산업 중 안면미용 의료기기 분야에 속합니다.

1) 재생의학산업(근골격계질환시장)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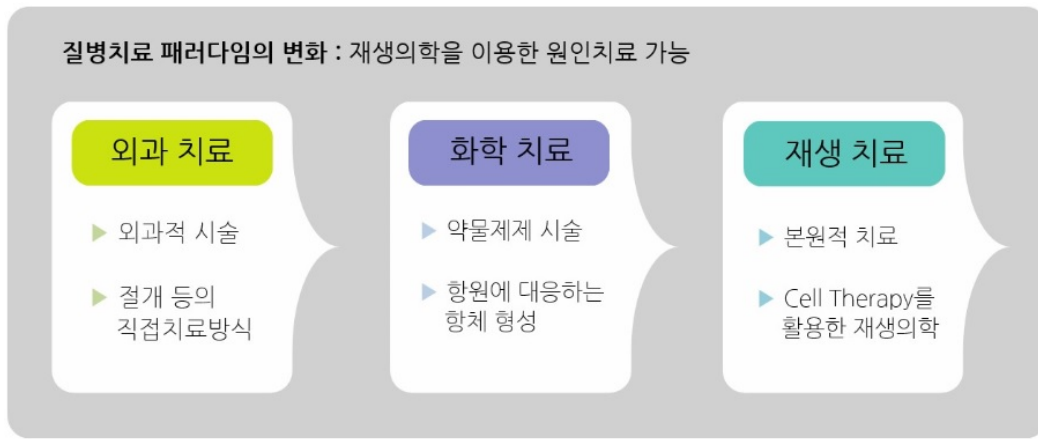
당사가 자체 개발하는 PDRN® 물질은 재생의학 중 인체의 자체회복능력을 활성화하는 촉진제 (Stimulators of endogenous repair)에 해당됩니다. PDRN®기반의 플라센텍스 및 리쥬비넥스는 자체회복능력촉진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로서, 당사는 PDRN®의 세포재생기능을 활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Various technologies in regenerative medicine, 줄기세포/재생의료의 현황 및 미래 전략. Hanyang Med Rev 2012;32:127-133)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은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질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는 약물이나 외과적 수술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으나, 2000년대 초 세포 및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류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증요법(Symptomatic treatment)이 아닌 원인요법(Causal treatment)이 가능한 재생의학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치료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존망 기술' 14가지 중 미래성장 주도 기술로 '재생의료 기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재생의학, 질병 치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출처: 대신증권 주요 산업 전망(2011.11))

재생의학의 대표 기술로는 줄기세포, 생체소재 (biomaterials),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을 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는 배양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cell therapy) 기술 외에도 내재성 줄기세포 활성화 기술 (stimulation of endogenous stem cells), 세포유전자치료 (gene therapy), 이종 이식 (xenotransplantation)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의학, 생물학, 화학, 공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 연구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의 주요 분야는 인체의 자체적인 재생 능력을 촉진하는 물질에 대한 개발 및 제품화 연구입니다.

당사의 주요목표시장인 근골격계질환 시장에서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ease, MSD)이란 근육과 골격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한 근육과 신경, 건,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애를 총칭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10)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골질환	전신 골 질환	골다공증(Osteoporosis)
	국소 골 질환 및 손상	골 유합장애(Nonunion/Delayed union)
		가관절증
		골괴사(Pseudoarthrosis)
		기타 골절(Osteonecrosis)
연골질환	증성 연골질환	골 관절염(Other fractures)
	연골 손상	연골부분충결손, 연골전충결손, 골연골결손
		골연골박리염(Osteochondritis dissecans)
		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반월상 연골 손상(Menisus injury)
연조직질환	근육 질환	뒤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상과염(Epicondylitis)
	인대(건) 손상 및 질환	인대파열(Ligamentrupture: 예, 전방십자인대 파열)
		건 파열(Tendon rupture: 예, 회전근개 파열)

		인대질환(예: Dupuytren contracture)
		회전근개 손상(Rotator Cuff Tears)
척추 질환	추간판 장애	
	척추 관절 질환	
	추체 질환	척주증(Spondylosis),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
	척수 질환	척추협착증(Spinal stenosis)
전신관절 질환	통풍성 관절염(Gout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출처: 줄기세포/재생의료동향보고서 근골격계질환(2014))

당사의 PDRN® 기반 제품인 플라센텍스, 리쥬비넥스는 위 표에서 연조직질환 중 인대(건) 손상 및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출시 예정인 관절강주사는 연골질환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조직은 골격근(Skeletal muscle), 건(tendon), 인대(ligament) 등이 포함되며, 골에 직접 또는 연조직 간의 결합에 의해 간접적으로 붙어 골의 움직임과 힘을 만들어내며 전신의 골 주위에 위치합니다. 건은 전신골과 근육을 연결하여 관절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건이 감염되거나 파열되는 경우, 건염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등의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골격근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요법으로 당질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라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용한 약물치료와 재활요법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조직 손상이 커지게 되면 수술과 같은 물리적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당사의 PDRN®기반 근골격계치료 제품의 경우 기존의 스테로이드제, 항염제(NSAIDs) 및 재활요법에서 벗어난 비수술치료법으로서, 환부가 약물치료를 하기에는 손상이 심하고, 수술을 하기에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환부에 투여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치료용제/용법과는 구분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PDRN®의 조직재생효과를 이용하여 연골질환 등 다른 세부 시장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안티에이징(안면미용시장)의 개요

안티에이징은 1980년대 미국정부의 예방의학 캠페인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초기단계의 시장으로서 그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연구원(2013)은 '안티에이징은 노화 기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2013)는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한 분야로서 안티에이징은 신체 노화를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종합컨데, 안티에이징 산업이란 노화를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및 치료에 관련된 산업을 총칭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2013)보고서에 따르면 안티에이징 분야는 크게 피부질환, 피부노화를 치료하는 의료 분야, 화장품 사업 등 소비재 분야, 서비스 분야로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산업의 분류]

안티에이징 사업 분류	개요
의료분야	보톡스, 필러시술, 마이크로니들, 레이저치료, 박피술 등 피부노화 증상을 치료. 그 외 심장, 뇌신경계 및 근골격계 치료시장 활성화
소비재분야	주름개선 에센스 등 고기능성 화장품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안티에이징 효능이 추가된 가습기, 세탁기, 이온 발생기 등 출시

(출처:삼성경제연구소, 2013)

국내 안티에이징 사업은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가 시장규모의 약 75%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분야의 성장성이 높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표의 분류상 안티에이징 사업 중 의료분야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안면미용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안면미용(Facial Aesthetics) 관련 시장은 보톡스, 필러시술, 레이저치료 및 박피술 등을 세부 시장으로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과 병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기술발전과 경쟁효과로 시술의 효과는 높아지는 반면, 시술 비용은 하락하면서 시술 횟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국내 피부과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1,157개로 2010년 1,002개에서 약 155개의 의원이 추가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은 강남 일대의 피부미용 의료시설이며 해당 지역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등 외국인의 의료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이 발간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 환자가 79,163명으로 2010년 10,723명 대비 연평균 49% 이상 성장하고 있어 향후로도 안면미용시장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면미용산업의 부상배경으로는, 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안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건강과 젊음에 투자하는 액티브시니어층이 부상 ② 여성의 취업기회 증가에 따라 안면미용 산업과 같은 선택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확대 ③ 안면미용시술의 일시적인 특성에 기인한 반복적인 시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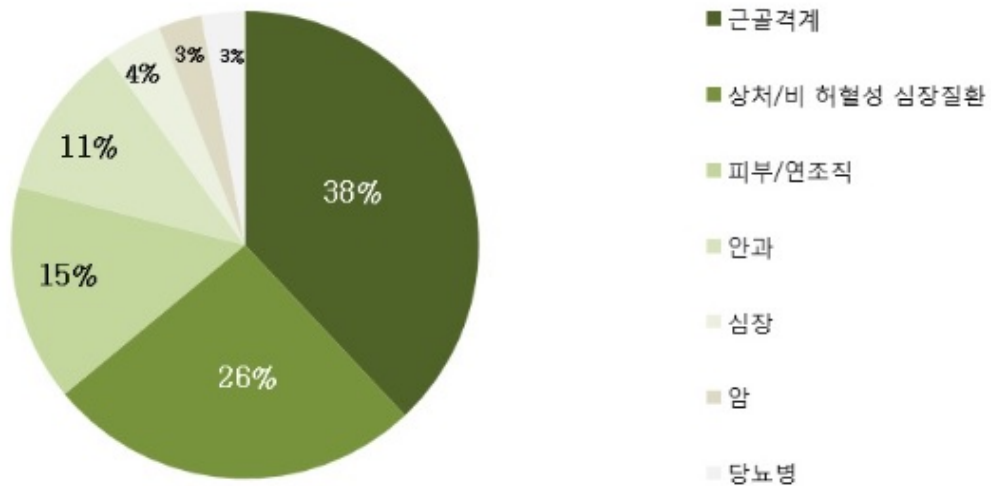
나. 시장 규모 및 전망

1) 근골격계질환 시장

근골격계질환은 노년 인구집단이 늘어나고 운동 관련 부상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한국산업연구원(201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세포와 조직공학을 이용한 근골격계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의 임상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약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기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생의료 제품 시장에서 근골격계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38%를 차지하며 약 46억 달러로 재생의료 제품 적용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생의료 제품의 비중]



(출처: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 Annual industry Report 2012)

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게재하는 22대 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진료현황을 기초로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전체 진료비의 약 5.6%를 차지하며 약 5.41조원으로 순환기계의 질환 다음으로 가장 시장규모가 큰 질병시장입니다. 근골격계시장은 진료실 인원수 기준으로(여기서 인원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1년간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하여 실제 인구와 일치하지 않음) 2013년 15백만명이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으며 10년간 CAGR 4.74%로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 통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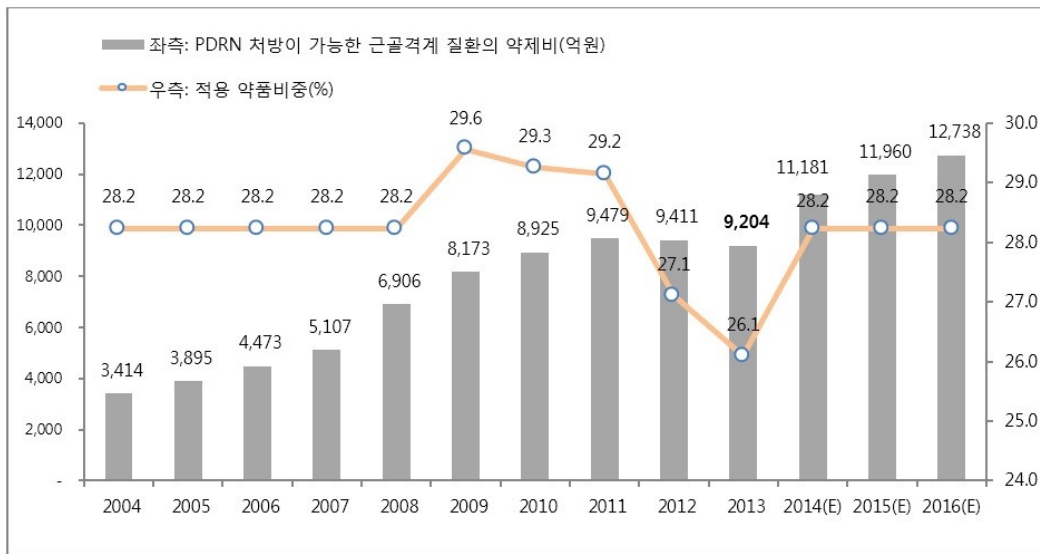
PDRN® 응용 의약품의 경우, 근골격계시장 중 연조직질환 시장에 속해 있으며 현재 연골질환 분야로 적응증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제품으로 적용가능한 시장 규모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치료시장 중에서 PDRN®으로 처방이 가능한 31개 상병(관절염 및 연조직 손상 등)을 분류한 결과 2013년 기준 약 3.6조원 시장에 PDRN® 응용 제품의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료비로 산정한 지난 10년간의 CAGR은 약 12.64%로 PDRN® 적응증 시장은 근골격계시장 전체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총요양급여비용 대비 약품비 현황]

연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2012	29.72	38.73	27.11	4.44
2013	29.78	39.69	26.10	4.43
2014	28.19	38.18	26.49	4.31
2015	27.77	39.42	26.15	3.65
2016	27.17	40.07	25.65	4.0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PDRN®처방이 가능한 국내 근골격계의약품의 시장규모]



(출처: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 통계, 2013)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년 근골격계질환환자 점유율이 2000년 13.5%에서 2013년 39.5%로 26%포인트 상승하는 등, 관절 및 건인대 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의 PDRN®응용 제품은 시판되는 제품 중 유일하게 손상부위를 수술없이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경쟁제품과 차별화되어 미래에도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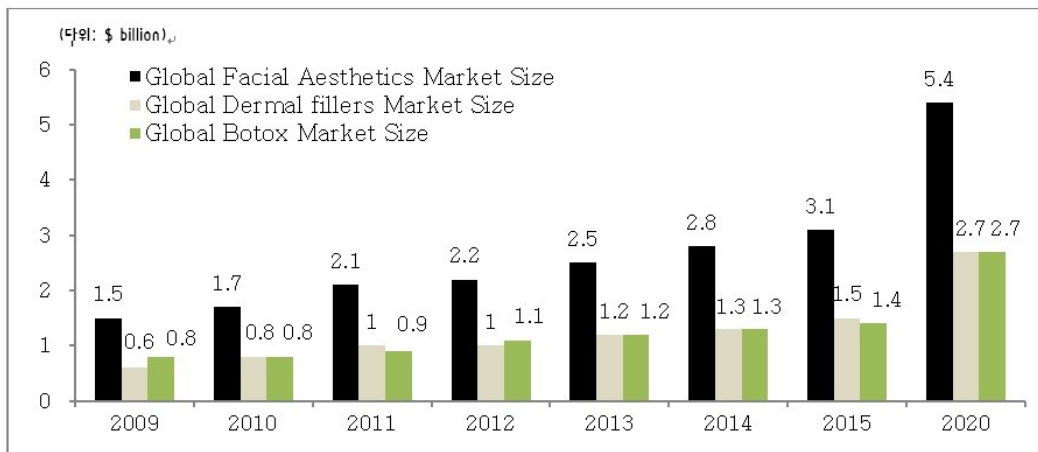
2) 안면미용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에 따르면 2013년 시장규모가 25억 달러였던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0년까지 1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5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로서 연령, 소득, 지역을 불문하고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령화와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글로벌 안티에이징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체되고 있는 GDP성장률과 민간 소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시장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 증가로 인한 안티에이징 수요급증과 삶의 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안티에이징 산업은 사회, 경제, 기술적 동인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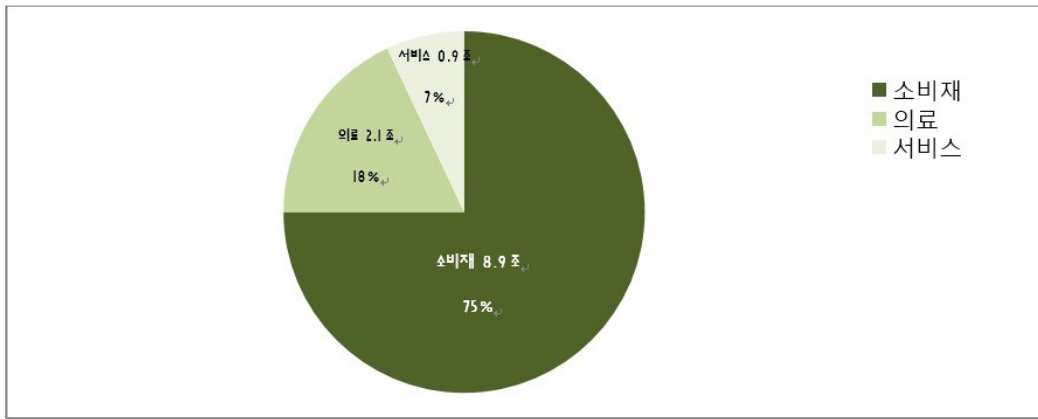
[글로벌 안면미용 시장규모(2009~2020)]



(출처: GBI Research 2014)

국내의 안면미용시장 역시 2011년 11.9조원에서 2020년에는 28.3조원으로 연평균 10.1%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삼성경제연구소(2013)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안티에이징시장은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가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며, 의료 분야가 18%, 서비스분야가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소비재기업이 국내에 존재하는 한편, 대부분의 의료 및 미용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위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티에이징 의료분야 중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안면미용시장 성장성이 두드러지며 과거의 소비재 중심 안티에이징시장에서 의료분야로 점진적인 주도권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삼성경제연구소(2013)]



국내 안면미용의료 시장은 2011년 기준 약 2.1조원으로 추산되며 보툴리눔 독신과 필러 및 레이저시술로 대표되는 뽀뽀성형시술은 약 1,800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출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2015.01)]

당사의 대표 안면미용제품인 리쥬란은 재생의학물질 기반으로 보톡스나 필러와는 작용기전 자체가 상이하나, 안면미용시장 소비자들이 주름개선 및 피부탄력의 개선 등, 보톡스, 필러 및 리쥬란의 대표적 효능을 유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쥬란을 비롯한 당사 안면미용 의료기기의 목표시장도 약 연간 1,800억원~2,000억원으로 판단됩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필러시장은 2019년까지 CAGR 1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의 리쥬란은 피부탄력 및 세포조직을 재생시키는 근원적 항노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피/표피의 두께를 개선하면서 피부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반면, 필러의 경우는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부탄력을 개선시키나, 주름의 원인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두 안면미용 제품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어 동시에 시술되는 용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품군이 국내 안면미용시장을 경쟁을 통해 세분화 하기보다 시장 자체를 확장시킬 것으로 당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이탈리아 Mastelli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조직재생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PDRN®/PN 관련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강릉에 GMP인증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PDRN®/PN물질 생산을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재생의학 의약품인 리쥬비넥스주, 리안점안액, 안티에이징 및 피부재생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인 리쥬란 및 기타 제품의 국내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R&D를 통한 제품개발 및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일본 중심의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체 고유의 재생 매커니즘을 활성화 및 촉진시키는 물질인 PDRN®, PN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학 원료로서 그 조성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분리된 DNA 분절체입니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특화된 규격으로 분리, 정제하고, 약효를 가지는 특정 절편으로 규격화하여 의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DRN®]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은 특정 규격의 뉴클레오티드 분절체로서 조직재생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DRN®은 인체 세포에 상시 존재하며 생리적으로 섬유아세포(fibroblast)의 재생 및 대사 활성을 자극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조직재생촉진제(tissue repairing stimulator)로서 PDRN®의 대표적인 작용은 세포 생성 촉진, 각종 성장인자 분비 촉진입니다. PDRN®은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원료로서, 피부 이식 후 재생, 족부궤양, 욕창, 화상, 건, 인대 재생, 각막 재생 등 다양한 인체조직의 재생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원료를 이용하여, 주사제, 크림제, 점안액 허가를 취득하였고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PN]

PN(Polynucleotide)는 PDRN®보다 핵산 체인의 길이가 더 긴 DNA 분획으로, PDRN®보다 큰 분자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고분자량의 물리적인 성질과 수화(hydration)작용을 통한 3D겔 형성으로 지지체로서 특성을 보여 의료기기의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미용 분야에서 섬유아세포(fibroblast) 분화 촉진 및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개발하였고, 관절의 연골 세포 결손 부위에 지지체로서 사용하는 관절강주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용 분야에서는 히알루론산 성분과 비교한 동물 시험을 통해 피부층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피부의 탄력과 거칠기 또한 탁월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단순 필러(filler) 개념이 아닌 피부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힐러(healer)로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 PDRN 주사 (플라센텍스주, 리쥬비넥스주)

PDRN®주사는 마스텔리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조직재생 전문의약품입니다.

다양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환자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질환 중 척추질환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관련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상, 비임상 연구 결과를 관련 학회에서 꾸준히 발표하는 등 근거 중심 마케팅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임상 근거자료 제작과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제품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 리쥬란

신제품 리쥬란 아이와 에스 출시를 통해 부위별 적정 점도와 분자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 라인업을 형성하였습니다. 피부의 층이 얇고 민감하여, 기존 시술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눈 밑, 눈 가 등의 잔주름을 신제품 리쥬란 아이로 개선하고, 관골(앞광대) 밑 꺼짐이나 턱 밑 꺼짐 등 함몰 부위 시술이 가능하도록 점도와 분자량을 높인 신제품 리쥬란 에스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 리쥬란의 입소문이 퍼지며 중국 환자들의 방문 시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을 위한 파트너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9월 말 리쥬란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은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향후 관련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리쥬란 코스메틱 사업부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리쥬란 브랜드의 제품 확대와 홍보/광고 활동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은 물론 더 큰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리쥬란 브랜드로 확장 되도록 단계별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리안 점안액

리안 점안액은 당사에서 PDRN원료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 유통까지 진행 하고 있는 국내 최초 PDRN 함유 점안액으로서 각, 결막에 영양공급하여 각막 미세손상의 치유를 도와 눈 불편의 원인을 개선시켜주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2016년 론칭과 함께 광고모델 박보검과 전속 계약하여 지상파 TV, 케이블TV, 극장, 디지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반소비자와 전문가인 약사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와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PNK 독점 판매로 운영해오던 유통 채널을 2017년 부터 지오영 도매업체를 추가하여 약국 시장 내 제품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매출 신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영업성과의 평가시 부문별로 구분된 재무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비교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시장점유율 비교가 불가합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PDRN® 및 PN 제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관절강주사 개발, 재생 화장품 출시 등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HA필러사업 인수로 메디컬에스테틱 사업영역으로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재생 화장품

동사는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일반 소비재인 화장품 영역에서도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사 특화된 화장품 원재료인 c-PDRN®을 개발하여 재생화장품 영역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c-PDRN® 자사의 DNA 최적화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시킨 원료로서 피부 Rejuvenation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는 2016년 미국 농무부(USD Organic) 인증을 받은 미국의 유기농 화장품 전문 업체인 DrJ. Organics를 인수하여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원료에 유기농 원료를 추가하여 안전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컨셉의 화장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 발매하고 있으며, 2017년 4분기부터는 온라인몰, 홈쇼핑에 진출하였고, 유통 플랫폼을 확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화장품산업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은 9조 255억원이며, 5년간의 CAGR은 약 8.2%로 성장성을 보입니다. 이는 화장품에 대한 필수재 인식,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소비 계층의 확대, 유통 플랫폼 확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시장규모	6,589,797	7,022,077	7,624,181	8,177,879	9,035,500	8.2
생산	6,385,617	7,122,666	7,972,072	8,970,370	10,732,853	13.9
수출	891,478	1,202,383	1,412,229	1,895,872	2,928,073	34.6
수입	1,095,658	1,101,795	1,064,338	1,103,320	1,230,720	2.9

(출처: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6)

화장품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판매 중심이었으나,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으로 플랫폼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소매판매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당사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소매판매액 및 온라인쇼핑 비중]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매판매액(B)	134,100	141,287	149,568	166,539	175,916
온라인쇼핑거래액(A)	16,055	19,458	21,005	26,690	35,195
비중(A/Bx100, %)	12.0%	13.8%	14.0%	16.0%	20.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2) 클레비엘 - HA필러(히알루론산 필러, Hyaluronic Acid filler)

히알루론산은 피부 내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 조직 사이에 젤리 상태로 들어있으며, 다량의 수분 함유 특성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피부에서 히알루론산 생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며 HA필러는 히알루론산을 가교반응시켜 점탄성과 응집력을 가지는 겔상태로 제조하여 주사기로 충전한 주사타입의 의료기기 제품입니다. 안면부 진피 층에 주입하여 주름개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부 속에 주입하는 일종의 충전재로 안면얼굴의 꺼진 부분이나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도 주사하면 미관상 입체감을 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HA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안전한 성분이나 바이오 원료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오염되기 쉬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사 클레비엘 제품은 최고순도의 HA원료 사용으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완전가교 최적화로 긴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A필러 중 가장 우수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 시술 직후 뚜렷한 효과를 제공하는 볼륨감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또한 주름 관리, 안면 윤곽 등 다양한 목적 및 시술부위별 필러 제품군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HA 필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시술가격의 하락을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 2013년 시장규모가 12억 달러였던 안면성형용 필러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7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안면성형용 필러는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 차례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짐
- HA 필러의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 및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은 것이 급격한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

[안면성형용 필러 세계 시장규모(2013-2020)]

단위 : 억달러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시장규모	12	13	15	17	19	21	24	27

자료: GBI Research, 2014

국내 필러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당 성형외과 의사 수 통계수치 하에, 유명 배우를 활용하여 캐주얼화되고 있으며 2015년 부터 본격적인 B2C 광고로 소비자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빅모델 활용으로 시술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매출액은 제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국내 필러 시장 성장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국내	49	57	65	71	78	86	94	101
성장률	8.89%	16.33%	14.04%	9.23%	9.86%	10.26%	9.30%	7.45%

자료: GBI Research, 2014

3) 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

관절에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골이 있으며, 이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점차 손실됩니다. PN은 고분자의 점성 물질로 연골 결손 부위를 대체하여 지지체 기능을 하며, 비임상, 임상 시험을 통해 염증 억제 및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2016년 관절강 내 주사 행위 청구 환자는 205만명이며, 진료 금액은 1,196억원입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통계청 KOSIS 국가 통계 포털 장래인구) 그에 따라 관절강 주사 시장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관절강 내 주사 행위 청구 실적]

(단위: 명, 회, 천원)

연도	환자수	사용량	진료금액
2012	1,600,503	6,353,284	80,892,139
2013	1,699,929	6,857,638	89,268,351
2014	1,814,028	7,477,425	99,954,052
2015	1,933,093	8,037,850	110,387,711
2016	2,050,289	8,493,280	119,610,285
CAGR	6.39%	7.53%	10.2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무릎 관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는 2016년 생산 실적 기준 약 1,47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Ann Intern Med. 2012;157:180-191 및 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술평가 기관인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관절강주사의 부작용 위험 및 관절염치료에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당사의 관절강주사가 관절강 주사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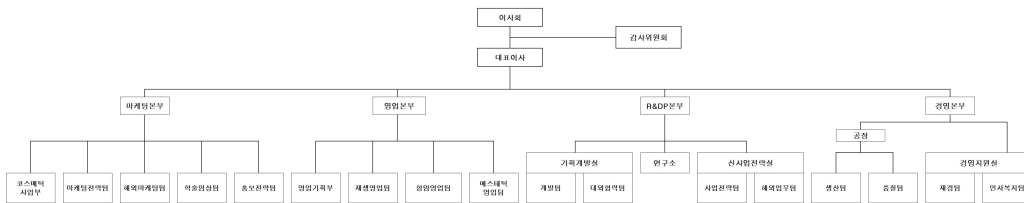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 생산 실적]

(단위: 명, 일)

연도	품목수	생산액(천원)
2012	22	78,721,493
2013	29	78,960,023
2014	36	92,260,205
2015	54	127,178,347
2016	57	147,053,179

(출처: 한국제약협회(2016) 의약품생산실적)

(5) 조직도



※ 2017년 12월 31일 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1호 의안 : 제 17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품매출 성장, PDRN 제품군의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리주란 제품 등의 수출 매출 증가로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더마코스메틱 출시로 인한 매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도 우호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안 점안액 재출시, HA필러, 보틀리눔 특신 등 신규 품목 증가로 외형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17(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말	제16(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12,335,226,039	126,468,142,204
현금및현금성자산	4,27,28,33,34	16,990,011,963	17,633,955,518
단기금융상품	27,28,30,31,33,34	34,581,973,042	46,293,244,80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27,28,34	3,005,038,121	26,502,363,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27,28,34	10,035,445,342	14,552,939,744
만기보유금융자산	10,27,28,34	23,000,000,000	5,000,000,000
매출채권	6,27,28,34	14,974,752,201	10,280,878,421
기타채권	7,27,28,34	3,382,855,837	500,837,104
재고자산	8	5,118,590,034	5,445,415,024
기타유동자산	9	1,246,559,499	258,508,585
II. 비유동자산		76,698,419,724	52,864,137,381
장기금융상품	27,28,33,34	10,389,641,813	10,167,718,716
비유동기타채권	7,27,28,34	263,590,125	233,39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27,28,34	25,540,174,689	-
매도가능금융자산	10,27,28,34	2,377,613,381	784,481,524
만기보유금융자산	10,27,28,34	-	15,000,000,000
관계기업투자	11	4,960,877,408	775,381,729
유형자산	12,14	27,179,365,605	20,771,422,119
투자부동산	13,14	1,780,055,892	924,874,237
무형자산	15	3,319,977,068	4,206,863,056
이연법인세자산	32	887,123,743	-
자 산 총 계		189,033,645,763	179,332,279,585
부 채			
I. 유 동 부 채		6,862,774,100	6,207,207,830
매입채무	27,28,34	1,732,356,590	2,028,896,364
기타채무	17,27,28,34	2,298,798,266	1,108,649,906
유동비금융부채	18	498,003,867	1,217,239,605
반품충당부채	19	256,751,813	267,826,546
당기법인세부채	32	2,076,863,564	1,584,595,409
II. 비 유 동 부 채		19,293,771	659,835,019
비유동기타채무	17,27,28,34,36	19,293,771	545,863,740

이연법인세부채	32	-	113,971,279
부 채 총 계		6,882,067,871	6,867,042,849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78,852,545,709	171,641,311,646
I. 자본금	22	4,733,108,500	4,733,108,500
II. 자본잉여금	22	121,893,351,265	121,893,351,265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3	(4,767,946,501)	(1,844,087,457)
IV. 이익잉여금	24	56,994,032,445	46,858,939,338
비지배지분		3,299,032,183	823,925,090
자 본 총 계		182,151,577,892	172,465,236,736
부채및자본총계		189,033,645,763	179,332,279,58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	제16(전)기
I. 매출액	3	54,469,757,891	45,953,114,757
상품매출		29,259,479,783	28,497,040,771
제품매출		24,611,032,011	16,850,453,192
기타매출		599,246,097	605,620,794
II. 매출원가	29	18,404,889,784	15,116,236,049
상품매출원가		12,213,131,293	9,639,203,741
제품매출원가		6,191,758,491	5,477,032,308
III. 매출총이익		36,064,868,107	30,836,878,708
판매비와관리비	25,29	21,221,276,503	16,731,755,417
IV. 영업이익		14,843,591,604	14,105,123,291
기타수익	26	538,104,491	40,531,836
기타비용	26	1,309,370,613	129,228,020
금융수익	27	3,490,753,276	3,445,894,889
금융원가	27	1,813,591,474	225,648,388
관계기업투자손익	11	(353,851,766)	88,062,10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395,635,518	17,324,735,714
VI. 법인세비용	32	2,878,946,160	3,497,610,592
VII. 당기순이익		12,516,689,358	13,827,125,122
지배지분순이익		12,955,558,107	13,909,058,677
비지배지분순손실		(438,868,749)	(81,933,555)

VIII. 기타포괄손익		(655,170,752)	172,754,82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	154,562,120	73,540,201
지분법자본변동	11	(65,189,542)	-
해외사업환산이익		(744,543,330)	99,214,624
IX. 총포괄이익		11,861,518,606	13,999,879,947
지배지분순이익		12,371,033,513	14,057,013,831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509,514,907)	(57,133,884)
X. 주당이익	35		
기본주당순이익		1,386	1,472
희석주당순이익		1,386	1,471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자본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2016.1.1(전기초)	4,582,249,000	116,629,455,765	691,902,589	34,843,124,061	156,746,731,415	-	156,746,731,415
연결범위변동	-	-	-	-	-	881,058,974	881,058,974
당기순이익	-	-	-	13,909,058,677	13,909,058,677	(81,933,555)	13,827,125,122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73,540,201	-	73,540,201	-	73,540,201
해외사업환산이익	-	-	74,414,953	-	74,414,953	24,799,671	99,214,624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 취득	-	-	(2,683,945,200)	-	(2,683,945,200)	-	(2,683,945,200)
배당금의 지급	-	-	-	(1,893,243,400)	(1,893,243,400)	-	(1,893,243,4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50,859,500	5,263,895,500	-	-	5,414,755,000	-	5,414,755,000
2016.12.31(전기말)	4,733,108,500	121,893,351,265	(1,844,087,457)	46,858,939,338	171,641,311,646	823,925,090	172,465,236,736
2017.1.1(당기초)	4,733,108,500	121,893,351,265	(1,844,087,457)	46,858,939,338	171,641,311,646	823,925,090	172,465,236,736
연결범위변동	-	-	-	-	-	3,000,000,000	3,0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	-	(35,882,000)	-	(35,882,000)	(15,378,000)	(51,260,000)
당기순이익	-	-	-	12,955,558,107	12,955,558,107	(438,868,749)	12,516,689,358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154,562,120	-	154,562,120	-	154,562,120
지분법자본변동	-	-	(65,189,542)	-	(65,189,542)	-	(65,189,542)
해외사업환산손익	-	-	(673,897,172)	-	(673,897,172)	(70,646,158)	(744,543,330)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 취득	-	-	(2,303,452,450)	-	(2,303,452,450)	-	(2,303,452,450)
배당금의 지급	-	-	-	(2,820,465,000)	(2,820,465,000)	-	(2,820,465,000)
2017.12.31(당기말)	4,733,108,500	121,893,351,265	(4,767,946,501)	56,994,032,445	178,852,545,709	3,299,032,183	182,151,577,892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	제16(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55,285,204	8,161,008,60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6	9,411,368,701	10,060,425,724
가. 당기순이익		12,516,689,358	13,827,125,122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6,050,206,715	1,519,365,653
다.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9,155,527,372)	(5,286,065,051)
2. 이자 수취		2,581,647,855	2,108,247,344
3. 이자 지급		(7,779,048)	-
4. 법인세 납부		(3,429,952,304)	(4,007,664,46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	(2,967,443,077)	(1,017,607,26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1,083,380,532	128,499,244,14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6,907,151,395	128,327,057,996
단기대여금의 감소		65,675,933	1,004,33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15,991,095,725	-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		88,093,842	-
종속기업 설립에 의한 순현금유입		3,0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1,363,637	6,181,818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	165,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4,050,823,609)	(129,516,851,40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5,176,138,281	91,232,883,989
단기대여금의 증가		3,000,0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증가		3,056,814,191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12,999,832,220	15,122,518,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8,000,000,000	20,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	12,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023,630,829	-
종속기업의 취득		-	1,082,831,997
유형자산의 취득		6,752,568,168	1,378,139,423
무형자산의 취득		121,191,805	579,57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878,453,990	-
보증금의 증가		30,194,125	108,908,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	(5,698,344,970)	(4,577,188,6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698,344,970)	(4,577,188,6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523,167,520	-
배당금의 지급		2,820,465,000	1,893,243,400
주식할인발행차금		51,260,000	-
자기주식의 취득		2,303,452,450	2,683,945,2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33,440,712)	204,683,68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IV)		(643,943,555)	2,770,896,42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633,955,518	14,863,059,09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990,011,963	17,633,955,518

주석

제17(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종속기업인 Dr. J Skinclinic, Inc., Pharmaresearch USA, Inc. 및 주식회사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이하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2001년 3월 3일 설립되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사업과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와 공장은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 77-19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원)이며,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각각 9,466,217주 및 4,733,108,5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정상수	3,892,373	-	3,892,373	41.12%
김익수	602,062	-	602,062	6.36%
강기석	450,390	-	450,390	4.76%
백승걸	84,788	-	84,788	0.90%

이강혁	84,788	-	84,788	0.90%
자기주식	126,412	-	126,412	1.34%
기타	4,225,404	-	4,225,404	44.62%
합계	9,466,217	-	9,466,217	100.00%

(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보고기간종료일	업종	지배력판단근거
Dr. J Skinclinic, Inc.	75.00%	미국	2017.12.31	화장품 판매 외	의결권과반수보유
Pharmaresearch USA, Inc.	100.00%	미국	2017.12.31	화장품 제조 외	의결권과반수 보유
(주)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70.00%	대한민국	2017.12.31	창업투자 외	의결권과반수보유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Dr. J Skinclinic, Inc.	1,959,349,031	94,375,341	1,370,281,800	(1,148,626,148)	(1,431,256,184)
Pharmaresearch USA, Inc.	5,374,921,308	-	-	18,834,602	(443,078,691)
(주)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9,684,948,843	39,163,186	6,780,821	(302,954,343)	(302,954,343)

(4)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연결범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변동내용	사유
Pharmaresearch USA, Inc.	신규포함	지분 취득
(주)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신규포함	지분 취득

(5) 당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포괄순손익	누적비지배지분
Dr. J Skinclinic, Inc.	25.00%	(347,982,446)	(418,628,604)	405,296,486
(주)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30.00%	(90,886,303)	(90,886,303)	2,893,735,697
합계		(438,868,749)	(509,514,907)	3,299,032,183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은 주식 36번에 기술하였으며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 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및 기타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80,583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23,0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2,413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28,46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회사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70,193백만원(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기금융상품 10,390백만원 제외)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23,0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239백만원이며, 당기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이익 216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28,46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중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25,457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해당 금융자산으로 인한 당기손익 변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기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6,990	16,990
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4,582	34,582
매출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4,975	14,975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646	3,646
장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	10,390	10,390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2,239	2,239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10,174	10,17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3,005	3,00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25,457	25,457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23,000	23,000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144,458	144,45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10,174백만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되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25,457백만원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144,458백만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비중이 19.2%로 증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 4,050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70,193백만원(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저축성보험 10,390백만원 제외) 및 만기보유금융자산23,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3,163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기대신용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재무적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기 말 현재 손실충당금 및 대손상각비가 각각 25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 (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 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기 말 현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 및 부채, 확정계약, 예상거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

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중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사업과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 판매, 부가서비스,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로열티 수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약회사에 대한 판권 라이선스 대가를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현행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품매출과 제품매출원가가 각각 98백만원씩 감소하는 한편, 환불부채 및 반품회수권자산이 각각 98백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⑤ 라이선싱: 접근권

연결회사는 일부 제약사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특정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총판권(라이선스)을 부여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 인식한 라이선스 수익은 485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0.9%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판촉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공동활동으로 고객이 보유한 라이선스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며, 고객은 기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르면 접근권에 해당하는 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합니다.

종전 리스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잉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회사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복합금융상품

전환상환우선주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상환우선주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연결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20년~40년	정액법
기계장치	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 각 방 법
산업재산권	1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연결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9)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의 진행률은 작업 수행 정도의 조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자산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회석주당이익은 모든 회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17(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말	제16(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96,627,937,550	122,799,928,979
현금및현금성자산	4,27,28,33,34	9,786,224,188	14,770,163,400
단기금융상품	27,28,30,31,33,34	26,367,773,042	46,293,244,80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27,28,34	3,005,038,121	26,502,363,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27,28,34	10,035,445,342	14,552,939,744
만기보유금융자산	10,27,28,34	23,000,000,000	5,000,000,000
매출채권	6,27,28,34	14,920,071,587	9,922,758,782
기타채권	7,27,28,34	3,360,701,075	435,161,171
재고자산	8	4,907,733,352	5,064,789,489
기타유동자산	9	1,244,950,843	258,508,585
II. 비유동자산		89,089,908,052	54,992,191,070
장기금융상품	27,28,33,34	10,389,641,813	10,167,718,716
비유동기타채권	7,27,28,34	249,607,284	233,39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27,28,34	25,540,174,689	-
매도가능금융자산	10,27,28,34	2,377,613,381	784,481,524
만기보유금융자산	10,27,28,34	-	15,000,000,000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11	19,010,903,433	5,165,278,085
유형자산	12,14	26,833,269,928	20,708,906,413
투자부동산	13,14	1,780,055,892	924,874,237
무형자산	15	2,021,517,889	2,007,536,095
이연법인세자산	32	887,123,743	-
자 산 총 계		185,717,845,602	177,792,120,049
부 채			
I. 유 동 부 채		6,835,299,893	6,036,837,124
매입채무	27,28,34	1,768,320,702	1,902,197,224
기타채무	17,27,28,34	2,252,528,283	1,073,559,899
유동비금융부채	18	488,860,317	1,217,239,605
반품충당부채	19	256,751,813	267,826,546
당기법인세부채	32	2,068,838,778	1,576,013,850
II. 비 유 동 부 채		30,000,000	113,971,279
이연법인세부채	32	-	113,971,279

비유동기타채무	17,27,28,34	30,000,000	-
부 채 총 계		6,865,299,893	6,150,808,403
자 본			
I. 자본금	22	4,733,108,500	4,733,108,500
II. 자본잉여금	22	121,893,351,265	121,893,351,265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3	(4,767,946,501)	(1,844,087,457)
IV. 이익잉여금	24	56,994,032,445	46,858,939,338
자 본 총 계		178,852,545,709	171,641,311,646
부채및자본총계		185,717,845,602	177,792,120,04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	제16(전기)
I. 매출액	3	53,554,110,158	45,566,681,313
상품매출		29,260,595,883	28,497,040,771
제품매출		23,675,455,306	16,464,019,748
기타매출		618,058,969	605,620,794
II. 매출원가	29	17,874,169,665	14,916,516,522
상품매출원가		12,214,247,393	9,639,203,741
제품매출원가		5,659,922,272	5,277,312,781
III. 매출총이익		35,679,940,493	30,650,164,791
판매비와관리비	25,29	19,094,150,012	16,241,936,238
IV. 영업이익		16,585,790,481	14,408,228,553
기타수익	26	538,100,463	40,531,836
기타비용	26	426,027,755	128,814,323
금융수익	27	3,413,491,757	3,445,883,492
금융원가	27	1,805,812,426	212,456,823
관계및종속기업투자손익	11	(2,471,942,925)	(157,791,21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833,599,595	17,395,581,517
VI. 법인세비용	32	2,878,041,488	3,486,522,840
VII. 당기순이익		12,955,558,107	13,909,058,677
VIII. 기타포괄손익		(620,406,594)	147,955,15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	154,562,120	73,540,201
지분법자본변동	11	(774,968,714)	74,414,953
IX. 총포괄이익		12,335,151,513	14,057,013,831
X. 주당이익	35		

기본주당순이익		1,386	1,472
희석주당순이익		1,386	1,471

자 본 변 동 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16.1.1(전기초)	4,582,249,000	116,629,455,765	691,902,589	34,843,124,061	156,746,731,415
당기순이익	-	-	-	13,909,058,677	13,909,058,677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73,540,201	-	73,540,201
지분법자본변동	-	-	74,414,953	-	74,414,953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 취득	-	-	(2,683,945,200)	-	(2,683,945,200)
배당금의 지급	-	-	-	(1,893,243,400)	(1,893,243,4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50,859,500	5,263,895,500	-	-	5,414,755,000
2016.12.31(전기말)	4,733,108,500	121,893,351,265	(1,844,087,457)	46,858,939,338	171,641,311,646
2017.1.1(당기초)	4,733,108,500	121,893,351,265	(1,844,087,457)	46,858,939,338	171,641,311,646
당기순이익	-	-	-	12,955,558,107	12,955,558,107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154,562,120	-	154,562,120
지분법자본변동	-	-	(774,968,714)	-	(774,968,714)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 취득	-	-	(2,303,452,450)	-	(2,303,452,450)
배당금의 지급	-	-	-	(2,820,465,000)	(2,820,465,000)
2017.12.31(당기말)	4,733,108,500	121,893,351,265	(4,767,946,501)	56,994,032,445	178,852,545,709

현 금 흐 름 표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기	제16(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60,920,691	8,771,402,47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6	11,164,877,793	10,626,300,685
가. 당기순이익		12,955,558,107	13,909,058,677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7,292,139,719	1,688,120,179
다.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9,082,820,033)	(4,970,878,171)

2. 이자 수취		2,525,948,925	2,108,235,947
3. 법인세 납부		(3,429,906,027)	(3,963,134,1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	(9,683,758,167)	(4,491,793,25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8,017,704,599	128,498,239,81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6,907,151,395	128,327,057,99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15,991,095,725	-
유형자산의 처분		1,363,637	6,181,818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	165,000,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
지분법투자주식의 감소		88,093,842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7,701,462,766)	(132,990,033,06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86,685,714,384	91,232,883,989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12,999,832,220	15,122,518,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8,000,000,000	20,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	12,000,000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56,814,191	-
관계및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16,511,630,829	4,561,334,727
유형자산의 취득		6,419,614,063	1,372,818,350
무형자산의 취득		121,191,805	579,57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3,000,000,000	-
투자부동산의 증가		878,453,990	-
보증금의 증가		16,211,284	108,908,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	(5,123,917,450)	(4,577,188,6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123,917,450)	(4,577,188,600)
배당금의 지급		2,820,465,000	1,893,243,400
자기주식의 취득		2,303,452,450	2,683,945,2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37,184,286)	204,683,68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I + II + III+IV)		(4,983,939,212)	(92,895,69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70,163,400	14,863,059,09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786,224,188	14,770,163,4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17(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18년 03월 30일

제16(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17년 03월 24일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단위 : 원)

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56,522,661,605		46,669,614,99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3,567,103,498		32,760,556,321	
당기순이익	12,955,558,107		13,909,058,677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III. 합 계(I + II)				46,669,614,998
IV. 이익잉여금처분액		-3,082,135,650		-3,102,511,500
이익준비금	280,194,150		282,046,500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300원(60%)				
전기 300원(60%)	2,801,941,500		2,820,465,000	
우선주 : 당기 -원(-%)				
전기 200원(40%)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440,525,955		43,567,103,498

주석

제17(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이하 "당사")는 2001년 3월 3일 설립되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사업과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와 공장은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77-19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원)이며,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각각 9,466,217주 및 4,733,108,5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정상수	3,892,373	-	3,892,373	41.12%
김익수	602,062	-	602,062	6.36%
강기석	450,390	-	450,390	4.76%
백승걸	84,788	-	84,788	0.90%
이강혁	84,788	-	84,788	0.90%
자기주식	126,412	-	126,412	1.34%
기타	4,225,404	-	4,225,404	44.62%

합계	9,466,217	-	9,466,217	100.00%
----	-----------	---	-----------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당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 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및 기타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5,074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23,0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2,413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28,46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4,684백만원(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기금융상품 10,390백만원

제외)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23,0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기말 현재 상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239백만원이며, 당기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이익 216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개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28,46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중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25,457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해당 금융자산으로 인한 당기손익 변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기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9,786	9,786
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26,368	26,368
매출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4,920	14,920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610	3,610
장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	10,390	10,390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2,239	2,239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10,174	10,17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3,005	3,00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25,457	25,457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23,000	23,000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128,949	128,94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10,174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25,457백만원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128,949백만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비중이 21.5%로 증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 4,051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54,684백만원(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저축성보험 10,390백만원 제외)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23,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3,163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기대신용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및 대손상각비가 각각 25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 (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 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 및 부채, 확정계약, 예상거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

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2017년 중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사업과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 판매, 부가서비스,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로열티 수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약회사에 대한 판권 라이선스 대가를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현행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품매출과 제품매출원가가 각각 98백만원씩 감소하는 한편, 환불부채 및 반품회수권자산이 각각 98백만원씩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⑤ 라이선싱: 접근권

당사는 일부 제약사에 대하여 당사의 특정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총판권(라이선스)을 부여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 인식한 라이선스 수익은 485백만원으로 당사 총 수익의 0.9%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판촉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공동활동으로 고객이 보유한 라이선스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며, 고객은 기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르면 접근권에 해당하는 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 적용 시 당사는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합니다.

중전 리스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도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역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

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복합금융상품

전환상환우선주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상환우선주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당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당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당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당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당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당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당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당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당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당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금액이며,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당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

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당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 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 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20년~40년	정액법
기계장치	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1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

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작업 수행 정도의 조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

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당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당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주당배당금(원)	300	300
배당총액(원)	2,801,941,500	2,820,465,000
시가배당율(%)	0.5	0.7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민 식	1966.08.12	사외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민 식	- 現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現 (주)카카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KICPA) - 前 삼성 KPMG FAS본부장	없음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민 식	1966.08.12	사외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민식	- 現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現 (주)카카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KICPA) - 前 삼성 KPMG FAS본부장	없음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 (2)	8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1,500백만원

※ 참고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주)바이오씨앤디 주식 인수 일정(3/28)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인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회장에서 확정된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중점 사항을 주주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준비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